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53 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 박범계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 20. 1. 14. 공포, 7. 15. 시행)됨에 따라 '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'를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(안 제2조제1호가목),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·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제27조).

법률 제 호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"중앙행정기관"을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기관"으로 한다.

제27조 중 "감사원은"을 "감사원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	1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	
관·법인·단체를 말한다.	
가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	가.
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	
국가인권위원회, <u>중앙행정</u>	고위공
<u>기관</u> (대통령 소속 기관과	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
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	<u>기관</u>
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	
및 지방자치단체	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7조(국회 등의 특례) 국회·법	제27조(국회 등의 특례)
원 · 헌법재판소 · 중앙선거관리	
위원회・ <u>감사원은</u> 부정청구등	<u>감사원·고위공직자범죄수</u>
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	<u>사처는</u>
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	
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	